

임금위상등결정

勞使자율에 맡겨

「가이드라인」철폐·기본급에 手當이 통폐합

노동부 업무지침

노동부는 올해부터 임금가가

88.1.20

이드라인을 철폐, 임금과 교섭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한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중요원칙지

주제를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규모별로 근로자복

지기중을 마련, 시행키로했다.

25일 노동부의 88년도 업무지침

및 추진지침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임금인상시기 및 임금협

상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제도 임금을 계기로 ▲각종수당을 통폐합, 기업규모의 비율을 높이고 정률·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점차 기본급에 흡수하며 ▲상여금의 경영성과에 따른 수수한 인센티브로 전환해나가고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임금상징으로 화력·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로했다. 특히 사업주가 주식구입자금을 중

업원에용자해주도록 권장, 근로자의 재산형성도 지원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인인상 사업창출과 창업보육지원 재형저축 실시 ▲50인이상인사당·목욕실·휴게실 설치 ▲1백인이상인 체육시설·도서관·의무실·정화제도 ▲3백인이상이면 기숙사·구판장·공제조합·임대주택·통근편의 ▲1천명이상인 직장주택조합·종업원 지주제를 실시, 근로자복지를 증진하도록했다.